

의안번호	제790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#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발 의 자 : 이의영, 김꽃임, 이옥규, 박경숙,  
유재목, 이종갑, 임병운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의 개정 (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→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)
- 목적 및 정의 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(안 제3조, 제6조~제8조)
- 스마트농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법정계획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조항 신설 (안 제4조의2)
-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(안 제5조)
- 위원회 규정의 정비(안 제9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4. 11.
- 협 의 : 농정국 스마트농산과
-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”을 “조례는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스마트농어업”이란 농어업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어업을 말한다.
4. “스마트농어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어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스마트농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
3. 스마트농어업 기술 개발, 보급, 확산 및 활용 촉진
4. 스마트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
5. 스마트농어업 기반 구축
6. 스마트농어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
7.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 스마트농어업에 대한 부분은 제4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으로 대체 할 수 있고,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은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시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
2.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
3.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활용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
5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각각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각각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)”을“(우수농어업인 교육기회 제공)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스마트농업의”를 “스마트농어업의”로, “충청북도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스마트농어업육성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육성계획”을 “종합계획 및 육성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스마트농업”을 각각 “스마트농어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3. (생 략)

<신 설>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
2.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

3. (현행과 같음)

4. “스마트농어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어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-----  
-----  
----- 스마트농어업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스마트농어업 육성시책 및 추

3.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, 보급, 확산 및 활용 촉진

4.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

5.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

6.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

7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·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 진전락

3. 스마트농어업 기술 개발, 보급, 확산 및 활용 촉진

4. 스마트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

5. 스마트농어업 기반 구축

6. 스마트농어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

7.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은 제4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으로 대체할 수 있고,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은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시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

제4조의2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
2.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 농업인 양성 방안
3.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활용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
5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---  
----- 스마트농어업-----

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  
· 개발 및 보급

2.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 
육성

3.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및 생산  
물 가공·유통 시설의 조성, 설  
치 및 운영

4.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·유통  
촉진

5.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 
및 전문컨설팅

6.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, 기획,  
유통, 광고, 회계, 기술개발 등을  
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

7.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  
굴 및 홍보

8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  
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사업

-----  
-----  
-----.

1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  
---

2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

3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4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

5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

6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7. 스마트농어업 -----  
-----

8. ----- 스마트농어업 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3.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

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7조(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) (생략)

제8조(기술의 홍보)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)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육성계획의 수립

2.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

스마트농어업-----

-----

3. 스마트농어업-----

-----
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우수농어업인 교육기회 제공)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기술의 홍보) -----  
스마트농어업-----

-----

-----

-----

제9조(위원회) ① ----- 스마트농어업의 -----

----- 충청북도스마트

농어업육성위원회-----

-----

-----

-----

② ----- 스마트농어업 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1.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-----

-----

2. 스마트농어업 -----

다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3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·④ (생략)

-----  
-----

3. ----- 스마트농어업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2. “스마트농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제5조(시·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
2.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
3.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
5.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·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5조(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,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(이하 “육성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
2.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
3.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4.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
5.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
6.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·위치·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~ ⑨ (생략)

## □ 양식산업발전법

- 제7조(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시·도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 ○ 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 ○ 작성자

농정국 스마트농산과장      황   규   석